
화승알앤에이 협력사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Partners)

•목적

화승알앤에이는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공급망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국내외 협력사에 적용하게 하며, 공급망 전반에서 법률 준수, 환경 보호 및 인권 존중 등의 우수한 관리를 추구한다. 이 지침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 가이드와 책임 있는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기준에 근거해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실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최신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다. 특정 국가법규와 충돌할 경우, 그 국가의 법률을 우선 적용하며, 화승알앤에이는 이 지침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상호 성장할 것을 목표로 본 지침을 선언한다. 본 지침은 산업 변화와 추세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화승알앤에이 협력사 행동규범 기본방침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1등 기업인 화승알앤에이는,
지속가능을 향한 동반 성장의 길을 함께한다.’

1. 협력사 임직원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부정 행위 및 채용 과정에서의 수수료 요구를 금지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2. 협력사와 임직원은 업무규정을 따라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 및 제 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협력사는 각국 법령 준수, 시장 지배 남용 금지, 대금 정시 지급, 경쟁 제한 방지, 부정한 정보 사용을 금지한다.
4. 협력사는 불법, 위조 원재료 및 부품 사용 금지, 정기적 검사 및 위반 시 정부나 고객사에 즉시 통보하여 계약 준수를 확보해야 한다.
5. 협력사는 각국의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법령과 국제규약을 준수하며, 관련된 국가나 개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화승알앤에이와 협력한다.
6.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지 않고, 업무를 통해 얻는 정보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만 수집 및 이용하고 변경 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협력사는 고객 및 거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침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8. 협력사는 전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와 구성품 조달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분쟁 광물을 배제하고,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를 점검하여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거나 인증 받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9.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유지해야 하며,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10.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1. 협력사는 수자원의 사용 및 폐수 배출을 측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의 사용량 절감 및 재 활용 증대와 함께 수질오염물질 법적 혹은 그 이상의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12.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생산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수명주기 고려와 안전한 화학 물질 관리에 주력하고, 원 재료 및 부품의 유해성을 파악 및 조치한다 .
13. 협력사는 동물실험 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한다. 또한, 생물다양 성 보전, 산림파괴, 해양오염 등의 예방을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14. 협력사는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며 연소자 고용 시 안전과 교육 기회 보장을 우선시하고, 아동노동을 용인하는 하위 거래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15. 협력사는 근로기준 및 강제 노동 금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강제노동 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행동규범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6. 협력사는 하위 거래업체의 준수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교육하여 강제노동의 위험 을 예방 및 관리하며 강제노동 발견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고, 화승알앤에이에 이러한 사실 및 조치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17. 협력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에 따른 채용, 승진, 임금, 복리후생에서 차별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폭언 등의 비인도적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사생활 존중 및 근로시간 외 지시 자체, 개인정보의 보호 등 임직원의 권리와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의 의무가 있다.
18.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원치 않는 연장근로 를 지양해야 하고, 불가피한 연장근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임직원에게는 주당 평균 1 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19.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 법규를 준수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 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 협력사는 법적 허용이 없는 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를 보관,폐기,은닉,몰수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고, 고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2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국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필요한 인증을 취득 유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22.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위험 기계 및 설비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평가, 필요한 안전장치 및 보호벽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임직원의 개인 보호를 위한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는 안전 보호구의 제공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23. 협력사는 비상상황 대비 계획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가별 법령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탈출로와 안전 설비의 정기 점검을 통해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4.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의 발생을 측정, 중단, 대피 및 원인 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25. 협력사는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언어로 제공,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산부, 연소자,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6.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청결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및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하고,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 다양성: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 ✓ 본 정책은 국내외 안전보건 법령과 규정, 안전보건경영 표준 및 지침(ISO 45001), 그리고 화승알앤에이의 안전보건경영 방침, 추진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수립.